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1 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양부남 • 권향엽 • 김문수

김한규 · 김현정 · 이개호

이광희 • 이해식 • 전진숙

정진욱 · 채현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매달 말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. 그 러나 현행법상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해 1회 지방세수입 결산 통계만 공개해 일반 국민은 지방세 흐름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매달 작성하여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월 별·세목별 수입징수 현황을 포함한 지방세 운용상황 분석 결과를 홈 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지방세의 흐름과 지방재정의 현황을 행정안전부 차원에

서 총체적·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해, 중장기 지방세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9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

제149조제3항 중 "공개"를 "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 을 "제6항"으로 한다.
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·공개 및 제 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·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혀 제149조(통계의 작성 및 공개) 제149조(통계의 작성 및 공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| ① ------세 관련 자료를 분석 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 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 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 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 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 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---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----. <신 설>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방세정보를 분석 · 공개 및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안전 부 내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 치할 수 있다.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세통계센 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<신	설>
\ L	

④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, 자료제출,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
터 제5항까지에 따라 지방세정
보를 분석·공개 및 제공하기
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
방세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・
운용할 수 있다.
<u> </u>